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개정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재산세가" 부과되므로 향교재단과 관련된 군세감면조례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

○ 2005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인하여 금년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는 2개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므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군세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함.

2.주요 개정내용

가.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안 제11조의2)

-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0.7 단일세율 적용.
-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는 1000분의 1.5 단일세율 적용.

나. 재산세 과표 경감 (안 제27조의2)

-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할 경우 :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관계법령 : 지방세법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6. 입법예고결과

○ 공고기간 : 2005. 8. 30 ~ 2005. 9. 20(21일간)

○ 공고결과 : 의견없음

7. 기타참고사항 :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7조의2(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7조의2의 신설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 신 설 〉	제11조의2(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향교 재단과 관련된 재산에 대하여 군세 감면 조례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
	제27조의2(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2개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므로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부 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7조의2의 신설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